



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6.]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 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0. 9.>

[본조신설 2011. 1. 26.]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 26.]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2023. 9. 2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11. 1. 26.]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 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배출농도 및 악취저

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11. 1. 26.]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6.]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19. 6. 1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8., 2019. 6. 11.>

[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9. 6. 11.]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
3.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신고대상시설 운영자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거나 조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체 없이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악취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이하 “악취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4제5호에서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5. 기술진단 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6. 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7.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9. 6. 11.]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0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법 제4조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로·하천·호소(湖沼)·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1. 1. 26.]

제8조의2(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3. 3., 2023. 9. 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다.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삭제 <2016. 12. 30.>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0. 9.]

[제목개정 2023. 9. 27.]

제8조의3(시·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시·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② 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9조(권한·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6. 11., 2020. 3. 3., 2023. 9. 27.>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 1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2.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법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5.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공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③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9. 18., 2016. 6. 28., 2016. 12. 30., 2019. 6. 11., 2023. 9. 2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고시
4.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6. 법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10.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0. 9., 2016. 6. 28., 2019. 6. 11.>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2. 10. 9.]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11.>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6. 28., 2019. 6. 1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환경부장관

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전문개정 2011. 1. 26.]

부칙 <제18695호,2005. 2.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 자목을 삭제하고, 동호 차목중 “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0297호,2007. 9. 28.>(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39호,201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3267호,2011. 10. 2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⑪부터⑮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35호,2012. 10.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8호,2014. 7. 16.>(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613호,2014. 9. 18.>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8호,2016. 6. 28.>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35호,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42호,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5호,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2021. 12.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④7 까지 생략

④8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9 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528호,2022. 3. 8.>(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2022. 12. 30.>(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774호,2023. 9. 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8호,2024. 11. 12.>(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1. 12.>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사무실

나. 다음의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실험실 각 1곳

- 1) 공기희석관능 실험실: 무취공기 제조장비 1벌 및 악취희석장비 1벌
- 2) 지정악취물질 실험실: 악취농축장비 1벌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실험기기 각 1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 각 1대 이상

가. 유속계

나. 수온 측정기

다.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라. 온도계

마. 습도계

바. 압력계

사. 복합악취포집 상자

아. 악취포집용 펌프

자. 임핀저(impinger, 집진측정장치) 세트

차. 미니펌프

카. 산업용 내시경

타. 연기발생기

파. 기상측정장비(온도, 습도,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 회전계

거. 전압전류측정기

너. 거리측정기

더.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

3. 기술인력

가. 기술진단을 위한 인력

- 1) 다음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가) 환경, 화학공학, 기계 관련 학과 박사

나) 대기관리, 상하수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기계 또는 산업기계설비 기술사

- 2)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화학분석, 일반기계, 기계설계 또는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3) 다음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각 1명 이상
 - 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나)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 분석사(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표에서 "환경측정분석사"라 한다)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나. 시료분석을 위한 인력

- 1)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2) 악취를 분석하는 요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가) 대기환경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화학분석 기능사 또는 환경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대기 분야 실험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악취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3) 악취를 판정하는 요원 5명 이상: 해당 기관의 근무인력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의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소정의 냄새 강도와 냄새질 시험을 통과한 표준적인 냄새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

비고

1. 비고 외의 부분 제1호의 시설 또는 제2호의 장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실험실(장비 및 실험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은 악취검사기관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이면 해당 실험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복합측정기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4.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하며, 기술인력 1명이 2종류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 또는 건설기계설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환경 관련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공학, 상하수도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다. 환경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 중 악취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기사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계설계 또는 건설기계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산업기사는 기계가공조립, 건설기계정비 또는 환경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또는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의 요건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라.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100	150	200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비고: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각 기술진단 대상시설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